

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9. 7) 상정
-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9. 7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배 효 원)

가.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었고,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재 분류된데 맞추어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0811호, 2008. 6. 11. 공포·시행)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·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의 개정으로 이에 맞추어 관련조문 정비(안 제2조)
-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이에 맞추어 조 번호를 정비(안 제2조·제3조·제6조 및 제7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특이사항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시행을 위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2조 제목 “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)”을 “(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)”로 하고, 본문 중 “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제6호를 삭제한다.

4. 판매시설

제3조 제목 “(미술장식의 설치)”를 “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12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9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60일 이내”를 “60일 이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3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심의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심의 후 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관한”을 “관할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1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“건축비용”이라 함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”을 ““건축비용”이란
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”으로 한다.

1.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
: 1천분의 7
2. 공동주택(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): 1천분
의 2

제6조의2제2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
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6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
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”을 “제3항에 따른 기간 내”로
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제7조제1항 중 “영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14조제4항에
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제8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
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“30명 이내”를 “30명 이내”
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재임중”을 “재임 중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고
로 인하여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위원중”을 각각 “위원 중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바에 의하여” “바에 따라”로 한다

제15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50호
의결 년월일	2009. 9. 8. (제154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8. 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었고,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재분류된데 맞추어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0811호, 2008. 6. 1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·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문화예술진흥법」의 개정으로 이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함.(안 제2조)
- 나.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이에 맞추어 조 번

호를 정비함.(안 제2조 · 제3조 · 제6조 및 제7조)

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시행을 위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2조 제목 “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)”을 “(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)”로 하고, 본문 중 “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제6호를 삭제한다.

4. 판매시설

제3조 제목 “(미술장식의 설치)”를 “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12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9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60일 이내”를 “60일 이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3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심의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심의회 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관한”을 “관할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1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“건축비용”이라 함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”을 ““건축비용”이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”으로 한다.

1.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: 1천분의 7
2. 공동주택(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): 1천분의 2

제6조의2제2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6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”을 “제3항에 따른 기간 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영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14조

제4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“30명 이내”를 “30명 이내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재임중”을 “재임 중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“유고로 인하여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위원중”을 각각 “위원 중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바에 의하여” “바에 따라”로 한다

제15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 <u>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</u> ----- <u>시행에</u> ----- -----.
제2조 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)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,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1.~3. (생략) 4. 판매 및 영업시설 5. (생략) 6. 공공용시설중 방송국·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	제2조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) ----- <u>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~3. (현행과 같음) 4. <u>판매시설</u> 5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제3조 (미술장식의 설치)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건축주”라 한다)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3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① - <u>영 제12조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<u>법 제</u> <u>9조에 따라</u>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<p>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착공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<u>60일</u>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<u>당해</u>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<u>60일</u> 이 <u>내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 <u>제2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.</p>
<p>제4조 (미술장식의 설치확인)시장은 <u>제3조제2항의</u>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<u>당해</u>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미술장식의 설치확인)----- <u>제3조제2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 (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) ① . ② (생략) ③시장은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<u>심의후 제1항의</u>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가격을 <u>관한</u>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 <u>심의 후 제1항에 따른</u> ---- ----- <u>관할</u> ----- -----.</p>
<p>제6조 (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) ① <u>영 제24조의</u>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<u>각호</u>와 같이 하되,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) ① <u>영 제12조에 따른</u>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: 1,000분의 7</p> <p>2. 공동주택(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: 1,000분의 2</p> <p>② 제1항의 “건축비용”이라 함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며,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표준건축비가 고시되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금액으로 한다.</p> <p>제6조의2 (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) ① (생략)</p> <p>② 건축주가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을 예치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설치확인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할 수 있다.</p> <p>③ 건축주는 예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장식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설치 예치금액으로 미술장식을 공모할 수 있다.</p>	<p>1.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건축물: 1천분의 7</p> <p>2. 공동주택(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): 1천분의 2</p> <p>② 제1항의 “건축비용”이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의2(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제4조에 따른 ----- 해당 -----.</p> <p>③ ----- 6개월 -----.</p> <p>④ -----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⑤ (생략)</p> <p>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.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1항에 따른----- ----- ---</p>
<p>제7조 (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영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운영에 ----- -----.</p>
<p>제8조 (위원회의 기능) 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기타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각 호 ----- -----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그 밖에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 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1명 ----- ---30명 이내-----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 (위원회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10조(위원회의 임기)----- ----- ----- -- 재임 중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 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위원의 해촉)-----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2조 (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12조(직무) ① ----- --- <u>총괄</u> ----- ---. ② -----<u>부득이한 사유로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 (회의) ①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신청서 접수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위촉된 <u>위원중</u> 15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소집한다.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<u>위원중</u>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13조(회의) ① ----- ----- -----<u>위원 중</u>----- -----. ② ----- <u>위원 중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4조 (실비변상)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한 <u>바에</u>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실비변상) ----- ----- ----- <u>바에 따라</u>----- -----.</p>
<p>제15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</u> ----- -----.</p>